

# 대학원 정원외 외국인 학생의 입학에 관한 내규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제5조(입학정원), 제34조(외국인 학생)의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자격)** 각 대학원별 입학전형에 대한 외국인의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 ① 박사학위과정  
국내·외 정규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예정)한 자로서 한국어사용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한 자
- ② 석사학위과정  
국내·외 정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예정)한 자로서 한국어사용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한 자
- ③ 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학위과정별 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조 (정의)** “외국인”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의한 다음의 사람을 말한다.

- ①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 ②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 ③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4조 (모집학과)** 대학원은 대학원 학칙 [별표 1]의 각 대학원별 모집학과로 한다.

**제5조 (모집시기)** 학생의 모집시기는 대학원 일반전형 일정에 준한다.

**제6조 (전형방법)** ①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발한다. 다만, 입국사증 관계로 입국이 불가능한 지원자의 경우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자가 입학 지원을 하는 경우 서류심사에 의하여 조건부로 예비 선발하고, 구술시험 후 최종 선발한다.

- ② 음악학과는 서류심사와 구술시험 및 실기시험에 의하여 선발한다.

**제7조 (제출서류)** 외국인 학생의 입학전형 관련 제출서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① 입학전형시 제출 서류
  - 가. 입학지원서(소정양식) 1부 및 사진(칼라 3x4cm) 2매
  - 나. 대학졸업(예정)증명서 1통(박사학위과정지원자는 대학졸업증명서와 대학원졸업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 반드시 우리나라 교육부 및 대사관에 상응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정식대학인가 증명서를 영어로 공증하여 제출
  - 다. 대학 성적증명서 1통(박사학위과정 지원자는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부)
  - 라. 출신대학 교수 추천서(소정 양식) 1통
  - 마.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 신학대학원은 신앙간증서(소정양식) 제출
  - 바. 해외거주 사실 확인서(한국계 외국인 및 재외교포 용) 1통
  - 사. 한국어 능력 증명서 또는 한국어 어학당 수료증 1통
  - 아. 본인 및 보호자(부, 모) 외국인 증명서 각 1부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지원자에 한함.
  - 자. 본인 호적등본(한국계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됨) 1통 : 호구부 사본(전체가족관계증명

서류)

차. 본인 여권 사본 1통(반드시 학교에서 원본 대조 확인을 받아야 함)

카. 대한민국 외무부에서 발행하는 외국인 등록증 사본(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1통

타. 신원보증서(소정양식) 1통

파. 재정능력 입증서류

1) 재정보증인의 장학금지급확인서(소정양식) 1통-유학경비 부담 서약서(입학지원서에 포함) : 재정보증인의 미화 \$10,000 이상 은행 등 예금잔고 증명서(1개월 이상 계속예치) 또는 미화 \$10,000 이상 국내 송금 또는 환전증명서

2) 재정보증인(초청단체)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1통

3) 재정보증인의 재산세 과세 증명서 1통

하. 그 밖의 대학원에서 정하는 사항(전형료 등)

**제8조** (등록금) 외국인학생은 소정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장학금 관련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외국인 등록) 입국이 완료된 유학생은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소에 외국인 등록신고를 필하여야 한다.

**제10조** (제적) 유학생이 다음사항을 위반시 제적할 수 있다.

1. 한 학기 30일이상 장기결석자
2. 출입국관리법과 국내법 위반자
3. 학업수행계획서를 현저히 위반한 자

**제11조** (학적변동) 외국인학생이 수학하는 동안에는 휴학을 불허한다. 다만,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하여 4주이상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종합병원 발행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하면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학생이 학업상 체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체류연장신청서
2. 여권 신상내용 사본 1부
3.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4. 장학확인서 1부
5. 재학증명서 1부
6. 등록예정확인서 1부

**제13조**(기타) 국제 학술 교류협력 등에 의하여 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 중 한국어 능력이 미흡한 학생은 대학원이 추천한 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용규정)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 기타 관련 내규를 준용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내규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각 대학원 위원회(신학대학원 및 신학전문대학원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시행한다.